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최근 인구 증가와 더불어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증가 추세로 있어 주차난이 야기되어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원활한 차량 소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오피스텔의 경우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75㎡당 1대 이상으로(안 제19조 관련 별표2의 제1항)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134㎡당 1대, 숙박시설은 100㎡당 1대로(별표2의 제2항)
-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1가구(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함(별표2의 제4항의 2)

□ 검토내용

< 법적 타당성 >

-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등의 증가에 기인한 인구와 차량 증가로 주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 규정에 의해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등의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으며

< 내용의 합리성 >

- 최근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 별도의 설치기준(75㎡당 1대)을 정하고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 숙박시설은 100㎡당 1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 다세대 주택의 경우 1가구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하여
- 경기도내 수원, 고양, 광명, 구리, 동두천, 부천 등과 비교하여 파주시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을 별도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였을 뿐 아니라

[타·시군 업무시설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 대상	파주시	수원시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동두천시	부천시
업무시설	150㎡당 1대 오피스텔 75㎡당 1대	120㎡당	100㎡당	100㎡당	100㎡당	100㎡당	100㎡당
1·2종 근생시설 · 숙박	134㎡당 1대 100㎡당1대	150㎡당	134㎡당	150㎡당	150㎡당	134㎡당	150㎡당
다가구주택 (다세대)	1가구당 1대이상 (현재 0.5대)	세대당 0.7대	세대당 0.7대	세대당 0.7대	세대당 0.7대	세대당 0.7대	세대당 0.7대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전반에 걸쳐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한 반면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대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